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04
----------	------

2020년 0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0년 8월 12일
- 다. 회부일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재개발원장 운영철)

가. 제안 이유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은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과 교육생, 강사 등이 이용하는 시설임
- 단체급식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추진, 식당 이용자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 시설규모 : 811m²
 - 릴리홀 : 647m²(식당 486m², 주방161m²), 로즈홀 : 164m²



나. 운영 개요

- 이용대상 :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직원 및 교육생 등
- 이용인원 : 1일 평균 약 800명('19년 기준)
- 급식단가 : 조식 2,000원, 중·석식 4,000원
- 근무인원 : 4명(영양사 1, 조리사 1, 취사원 2)

다. 위탁사무 내용

- 위탁기간 : 2년(2021. 1. 1 ~ 2022. 12. 31.)
- 위탁업무
 - 식재료를 구입·조리·가공한 급식(조·중·석식)을 판매하는 행위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청결유지 및 소독, 위생 점검(감사) 수감 등 구내식당 운영 및 단체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없음(수익창출형 민간위탁)
 - ※ 2019년 연간매출 : 764,055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6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및 제10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999. 8. 23. ~ 2002. 8. 22.(3년, CJ 푸드시스템)
 - 2차 : 2002. 8. 23. ~ 2004. 8. 22.(2년, CJ 푸드시스템)
 - 3차 : 2004. 8. 23. ~ 2006. 8. 22.(2년, <주>ECMD)
 - 4차 : 2006. 8. 23. ~ 2008. 8. 22.(2년, 현대푸드시스템)
 - 5차 : 2008. 8. 23. ~ 2010. 12. 31.(2.4년, 현대그린푸드)
 - 6차 : 2011. 1. 1. ~ 2012. 12. 31.(2년, 현대그린푸드)
 - 7차 : 2013. 1. 1. ~ 2014. 12. 31.(2년, 동원홈푸드)
 - 8차 : 2015. 1. 1. ~ 2016. 12. 31.(2년, 삼주외식산업)
 - 9차 : 2017. 1. 1. ~ 2018. 12. 31.(2년, 아워홈)
 - 10차 : 2019. 1. 1. ~ 2020. 12. 31.(2년, 아워홈)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서,
- 약 20여 년간 전문 단체급식 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교육생 및 직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전문업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식당 운영이 가능하며, 식자재 대량 구매를 통해 낮은 단가로 구매하여 비용 절감도 가능
- 직영 운영 시, 정규직·계약직 직원 고용예산 확보 필요 등 별도 비용 발생이 수반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구내식당 민간 재위탁 추진 기본계획
(인재기획과-4173, '20. 4. 7.)
-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정' 의결('20. 5. 1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재위탁(1999년 8월 최초 위탁, 2012년 9월 10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민간위탁 개정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본 동의안은 단체급식 전문업체의 운영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교육생 및 직원에게 고품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 시설규모 : 811 m^2 (330석)
 - 릴리홀 : 647 m^2 (276석, 식당 486 m^2 , 주방 161 m^2)
 - 로즈홀 : 164 m^2 (54석)
- 이용대상 :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직원 및 교육생 등
- 이용인원 : 1일 평균 약 800여 명('19년 기준)
- 급식단가 : 조식 2,000원, 중·석식 4,000원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의 민간위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2년(2021. 1. 1 ~ 2022. 12. 31.)
- 위탁업무
 - 식재료를 구입·조리·가공한 급식(조·중·석식)을 판매하는 행위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청결유지 및 소독, 위생 점검(감사) 수감 등 구내식당 운영 및 단체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없음(수익창출형 민간위탁)
 - ※ 2019년 연간매출 : 764,055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나.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음.
- 인재개발원은 민간위탁시 인건비 등 예산절감과 전문업체의 식자재 대량구매방식에 의한 절감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방식이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

[민간위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 체제 미흡 · 공익성(공공성) 퇴색 ·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노후화 촉진 ·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 1999년 이후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CJ 푸드 시스템, 현대푸드시스템, 현대그린푸드, 삼주외식산업, 아워홈과 같이 기업체의 효율적 물류조직을 통해 부식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맡아 왔으며, 서울시의 별도 예산지원 없이 직원들의 매식비(買食費)로 운영되어 왔음.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 연혁]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비 고
'99. 8. 23.~'02. 8. 22.	CJ 푸드시스템	
'02. 8. 23.~'04. 8. 22.	CJ 푸드시스템	
'04. 8. 23.~'06. 8. 22.	(주)ECMD	
'06. 8. 23.~'08. 8. 22.	현대푸드시스템	
'08. 8. 23.~'10. 12. 31.	현대그린푸드	
'11. 1. 1.~'12. 12. 31.	현대그린푸드	
'13. 1. 1.~'14. 12. 31.	동원홈푸드	
'15. 1. 1.~'16. 12. 31.	삼주외식산업	
'17. 1. 1.~'18. 12. 31.	(주)아워홈	
'19. 1. 1.~'20. 12. 31.	(주)아워홈	

-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 민간위탁 근거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10조이며, 인재개발원은 구내식당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인건비와 전문업체의 식자재 대량구매방식에 의한 예산 절감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방식이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치과진료실·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바,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서울시 청사내 구내식당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재하고 있는바,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주요기관 구내식당 위탁 연혁]

구 분	본청 구내식당	서소문 별관 구내식당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소방학교 구내식당
운영업체	직영	직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위탁기간	직영전환(2012년)	직영전환(2012년)	2019.1.1. ~ 2020.12.31.(2년)	2016.6.30.~ 2018.6.30.(2년)
운영인력	26명 (공무원 2명, 후생복지심의회소속(무기계약)12명, 도급 용역 12명)	28명 (공무원 4명, 후생복지심의회소속(무기계약) 9명, 도급 용역 15명)	9명 (영양사 1, 조리실장 1, 찬모 1, 조리원 5, 홀 1)	
건물규모	연면적 2,861㎡(745석)	연면적 2,100㎡(510석)	연면적 811㎡(280석)	480.73㎡(227석)
급식인원	1일 평균 1,155여명	1일 평균 956여명	1일 평균 520여명	1일 평균 400여명
급식단가 (식권)	조식 2,000원 중식 3300원(식권3500원), 석식4,000원		조식 2,000원, 중·석식 4,000원	3,500원

- 아울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15개 주요 광역시도 인재개발원에서는 민간위탁 방식보다는 직영을 통한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는 바, 직영 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운영 사례와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내식당 운영방식 전환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광역시·도 인재개발원별 운영 체제 및 가격 및 이용인원 현황]

기관명	운영체제	가격	이용인원/1일 (중식기준)	비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직영	4,500원	700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탁	4,000원	800명	
부산시 인재개발원	위탁	4,000원	600명	
인천시 인재개발원	직영	3,000원	350명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직영	3,000원	400명	
대전시 인재개발원	직영	3,500원	200명	

경기도 인재개발원	위탁	4,000원	650명	
강원도 인재개발원	위탁	4,000원	200명	
충북 자치연수원	직영	4,500원	300명	
충남 공무원교육원	직영	4,000원	300명	
전북 인재개발원	직영	4,000원	270명	
전남 공무원교육원	위탁	4,500원	200명	
경북 인재개발원	위탁	4,000원	130명	
경남 인재개발원	직영	3,000원	600명	
제주도 인재개발원	직영	4,000원	150명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 이전 기준

구분	민간위탁	직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단체급식 운영의 전문성·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급식 제공 가능 ○ 메뉴 다양성 확보로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재료를 다량구매, 동일 제품을 낮은 단가로 구매함으로써 질 좋은 재료 확보 가능 ○ 예비 인력풀 활용, 타 지점과의 인사교류 등을 통해 상황에 따라 유연한 근무 인력 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등 품질관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짐. ○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단제공 가능성이 높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지원 불가, 적자 발생 시 급식 서비스 저하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공무원 채용 시, 市 예산 소요 - 市 구내식당 공무원 평균 인건비: 연 3,300만원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영양사 등 최소 7명 인원 투입 필요 연 2억3천만원 소요 예상

- 둘째, 직원의 매식비로 운영하여야 하는 민간위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탁업체의 무리한 이익창출 등으로 교육생에게 질 낮은 식사가 제공될 우려도 간과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위탁시 철저한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2020년도의 경우 인재개발원은 코로나 19 감염증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하반기의 경우에도 집합교육 축소 운영 등에 따라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코로나 19 감염증이 2021년도에도 지속될 경우 구내식당 이용 감소가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요소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0년 인재개발원 정산 내역]

구분	2020년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매출액	45,666,990	12,316,102	0	0	0	19,853,921
매점매출	450,712	101,591	0	0	0	66,694
급식매출	45,216,278	12,214,511	0	0	0	19,787,227
2. 매출 원가	53,545,146	23,560,310	3,478,940	5,524,995	250,978	29,462,342
매점 원가	251,238	53,526	0	0	124,856	43,307
재료비	28,545,406	8,369,131	0	0	0	12,110,891
인건비 계	19,672,258	10,833,168	2,140,888	4,433,238	-557,938	13,999,592
임금	14,970,574	8,110,431	1,518,600	1,944,410	318,531	9,864,301
상여금	976,014	381,789	140,221	133,560	32,313	640,206
퇴직급여	1,439,099	1,309,294	805,617	766,368	382,912	1,675,531
복후비	2,286,571	1,031,654	-323,550	1,588,900	-1,291,694	1,819,554
경비 계	5,567,104	4,367,385	1,338,052	1,091,757	684,060	3,495,806
수도광열비	2,276,901	2,190,081	520,734	174,550	17,430	1,314,420
감가상각비	562,754	552,761	552,753	552,755	552,759	552,755
소모품비	858,293	338,110	0	0	0	326,238
세금과공과	425,200	507,550	209,920	288,040	0	440,360
보험료	18,652	17,448	18,650	18,051	18,651	18,049
여비교통비	58,200	55,300	0	0	0	11,400
통신비	3,136	3,396	3,711	6,512	2,220	2,065
교육훈련비	0	0	0	0	0	35,000
도서인쇄비	0	180,000	0	0	0	0
광고선전비	0	0	0	0	0	0
대손상각비	211,474	-209,436	-79,729	-1,151	0	47
임차료	220,000	220,000	40,000		40,000	220,000
지급수수료	932,494	512,175	72,013	53,000	53,000	575,472
타계정 대채출(용역)	-490,860	-62,900	0			-187,254
매출 이익	-7,878,156	-11,244,208	-3,478,940	-5,524,995	-250,978	-9,608,421
관관비 계	2,397,001	2,056,000	3,058,999	0	0	0
3. 당기 순이익	-10,275,157	-13,300,208	-6,537,939	-5,524,995	-250,978	-9,608,421

- 셋째, 최근 3년간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등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고, 실시하지 않는 분기도 존재하는 바, 만족도 관리 및 반영에도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재개발원 최근 3년간 분기별 교육생·직원 만족도 조사 현황]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0년	-		실시 예정	
2019년	-		4.12	
2018년	4.21		4.18	

- 넷째, 본 동의안을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2021.1.1.~2022.12.31.)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¹⁾)에 따르면,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년의 위탁기간에 따른 잦은 수탁기관 선정이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은 최근 3년간 행정국 지도·점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²⁾에 근거) 결과, 시설 및 환경, 개인위생, 식재·행정관리 등의 미흡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 인재개발원은 행정국의 지도점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관리위탁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지도점검 결과]

구 분	점검일	주요 점검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0년	'20. 7. 15.	시설 및 환경·개인 위생, 식재·행정관리	조리실 바닥 및 식기회수대 파손	일부 조치 (식기회수대 수리)
2019년	'19. 7. 4.	시설 및 환경·개인 위생, 식재·행정관리	시설 노후로 인한 파손 부분 수리 필요	조치
2018년	'18. 7. 16.~17.	시설 및 환경·개인 위생, 식재·행정관리	방충·환기시설 정비, 고장 및 파손시설 교체	조치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804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은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과 교육생, 강사 등이 이용하는 시설임
- 나. 단체급식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추진, 식당 이용자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 시설규모 : 811m²
 - 릴리홀 : 647m²(식당 486m², 주방161m²), 로즈홀 : 164m²



나. 운영 개요

- 이용대상 :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직원 및 교육생 등
- 이용인원 : 1일 평균 약 800명('19년 기준)
- 급식단가 : 조식 2,000원, 중·석식 4,000원
- 근무인원 : 4명(영양사 1, 조리사 1, 취사원 2)

다. 위탁사무 내용

- 위탁기간 : 2년(2021. 1. 1 ~ 2022. 12. 31.)
- 위탁업무
 - 식재료를 구입·조리·가공한 급식(조·중·석식)을 판매하는 행위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청결유지 및 소독, 위생 점검(감사) 수감 등 구내식당 운영 및 단체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없음(수익창출형 민간위탁)
 - ※ 2019년 연간매출 : 764,055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6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및 제10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999. 8. 23. ~ 2002. 8. 22.(3년, CJ 푸드시스템)
- 2차 : 2002. 8. 23. ~ 2004. 8. 22.(2년, CJ 푸드시스템)
- 3차 : 2004. 8. 23. ~ 2006. 8. 22.(2년, <주>ECMD)
- 4차 : 2006. 8. 23. ~ 2008. 8. 22.(2년, 현대푸드시스템)
- 5차 : 2008. 8. 23. ~ 2010. 12. 31.(2.4년, 현대그린푸드)
- 6차 : 2011. 1. 1. ~ 2012. 12. 31.(2년, 현대그린푸드)
- 7차 : 2013. 1. 1. ~ 2014. 12. 31.(2년, 동원홈푸드)
- 8차 : 2015. 1. 1. ~ 2016. 12. 31.(2년, 삼주외식산업)
- 9차 : 2017. 1. 1. ~ 2018. 12. 31.(2년, 아워홈)
- 10차 : 2019. 1. 1. ~ 2020. 12. 31.(2년, 아워홈)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서,
- 약 20여 년간 전문 단체급식 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교육생 및 직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전문업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식당 운영이 가능하며, 식자재 대량 구매를 통해 낮은 단가로 구매하여 비용 절감도 가능
- 직영 운영 시, 정규직·계약직 직원 고용예산 확보 필요 등 별도 비용 발생이 수반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구내식당 민간 재위탁 추진 기본계획
(인재기획과-4173, '20. 4. 7.)

○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정' 의결('20. 5. 12.)

※ 작성자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김우람(☎3488-2032)